

운영위원회 전원의 서면결의서

- 기관명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춘천동부노인복지관 및
부설 자비손노인복지센터

상기 기관은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 전원의 동의로서 운영위원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2020년도 제3분기 정기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운영위원 전원의 서면 동의로서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결 의 사 항 -----

1. 상기 기관은 「회원운영규정」 개정을 의결한다.

가. 회원운영규정 개정 내역

- 1) 실시근거 : 본 복지관 회원운영규정 개정(안)
- 2) 적용대상 : 본 복지관 회원 어르신
- 3) 적용기간 : 2020. 05. 15. 이후부터

나. 회원운영규정 개정 사유

- 1) 제5조(회원의 의무) ①항 11호 신설

- 법정 전염병(코로나-19 바이러스 포함) 예방수칙(질병본부)을 준수하지 않거나,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한 질병본부(보건소 포함) 및 기관의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 2) 제14조(이용제한-회원, 강사 등 타인 포함) ①항 5호, ②항 1호 및 2호 개정

- 제5조(회원의 의무) ①항 11호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1년의 이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다. 처리방법 : 운영위원회 서면결의 후 회원운영규정 시행

- 붙임 1. 운영위원회 명부 1부.
2. 회원운영규정 1부. 끝.

2020. 09. 21.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천태종복지재단
Cheontae Order Welfare Foundation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회 원 운 영 규 정

제정 2015.06.26.

개정 2017.10.19.

개정 2018.04.01.

개정 2018.07.01.

개정 2018.09.01.

개정 2018.11.29.

개정 2020.05.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회원 어르신들의 원활한 복지관 이용 및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①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준한다.

1. 주소지를 춘천시에 둔 만 60세 이상으로 한다. 단, 회원의 배우자인 경우 만 60세 미만인 경우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

제3조 (복지관 이용시간)

평일 09:00 ~ 18:00 / 주말 09:00 ~ 18:00(토요일에 한함/ 일요일 및 국경일 휴관)
단, 설날 및 추석명절 연휴 직전 또는 직후에 연속되어 있는 토요일은 휴관할 수 있다.
<신설 2018.09.01.>

제4조 (회원신청과 회원증)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은 소정의 비용 및 서류를 제출하고 이용신청 및 신규회원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후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이용신청서류 :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 확인서류, 사진. 비용

가. 회원 가입비 : 10,000원/인

나. 회원 카드 재발급비 : 5,000원/인

- 단, 회원 카드 오류로 인한 재발급 : 무료

다. 기타

- 1) 영수증 발급 이후 회원 가입비 환불은 절대 불가하며, 영수증 하단에 안내문을 공지함으로써 회원이 환불 불가사항을 직접 확인토록 도모한다.

- 2) 현금 징수(비영리사업)

제5조 (회원 등의 의무)

-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 및 수강자는 선량한 사용자 등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각호와 같다.
 1. 복지관의 원활한 이용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2. 건전한 여가선용과 질서유지를 위해 복지관의 방침에 따른다.
 3. 타 회원 및 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4. 회원증을 착용하고 제시하며 타인에게 양도 및 도용을 하지 않는다.
 5. 복지관 내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며 사용 후에도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 손괴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그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6. 복지관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으며, 복지관을 대표하여 참여하는 외부행사 시, 복지관의 동의를 구한다.
 7. 회원 과실로 인한 분실사고, 부주위로 인한 사고 등의 책임을 회원이 진다.
 8. 흡연은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며, 음주 및 음주상태의 출입을 하지 않는다.
 9. 복지관 내에서 사행성 놀이, 모금 활동, 정치·영리행위, 비방, 물품매매행위, 불건전행위, 종교 활동, 싸움(말다툼), 고성방가, 성희롱 등을 하지 않는다.
 10. 회원 가입 시 회원가입신청서에 준수하기로 서약한 ‘이용자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제14조에 의거한 복지관 방침(이용제한)을 따른다.

<신설 2018.09.01.>

11. **법정 전염병(코로나-19 바이러스 포함) 예방수칙(질병본부)을 준수하지 않거나,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한 질병본부(보건소 포함) 및 기관의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신설 2020.05.15.>

제6조 (회원권리)

- ① 본 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회원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 및 사생활 비밀 등을 보호받을 권리
 2. 하나의 독립적 인격체로서 대우받을 권리
 3. 복지관이 실시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 신청,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시설 또는 회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을 받을 권리
 5. 민원을 건의할 권리

제7조 (개인정보보호 및 권리양도금지)

- ① 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 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 받을 수 있다.
- ② 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1. 복지관은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공공기관 및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복지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4. 이용자는 복지관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이용자의 개인 파일 및 전산프로그램은 보안 유지를 위해 별도의 잠금장치 또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직원은 직무와 관련되어 알게 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해 반드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프로그램 신청 및 이용방법)

- ① 복지관은 회원들이 분야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강생 모집을 공고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프로그램 이용은 복지관에 등록된 회원으로,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여 프로그램 회원명단에 등록된 경우 가능하다
- ③ 단, 별도의 수강 신청이 필요치 않은 프로그램은 복지관 회원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경우 이용 가능하다.

제9조 (프로그램 운영)

- ① 프로그램 운영은 회원의 욕구에 맞추어, 회원을 위해 시간대 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 ② 관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시 평가하여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폐강하는 등 프로그램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 ③ 관장은 회원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이 신설 또는 폐지 될 수 있도록 복지관 내 관장 이하, 사업 담당자 등 5인 이상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

- ① 프로그램 이용은 복지관에 등록된 회원으로,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여 프로그램 회원명단에 등록된 경우
- ② 별도의 수강신청이 필요치 않는 프로그램은 복지관 회원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경우
- ③ 분야별 시설에 사용하는 또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는 지정된 시간·장소에 사용 또는 수강하여야 하며, 무단 또는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시설사용자 및 수강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 ⑤ 관장은 체력단련실 등 안전사고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화재보험, 상해보험 등의 가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모든 시설, 기구, 비품은 그 용도에 맞게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상, 파괴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 ⑦ 회원이 복지관에 후원품(비품 및 소모품)을 기부할 경우 해당물품 전부는 복지관 소유로 귀속되어 관리된다.

제11조 (사용료의 징수)

-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프로그램 및 사업(건강생활급식지원사업 외)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및 사업 실비 : 평생교육사업 운영규정 참조

2. 경로식당 식대비 : 2,700원/ 1인(본 규정 제2조에 의거한 회원)

<개정 2018.11.29.>

※ 국가유공자 식대비 : 1,300원(일반 식대비의 50% 감면)

<신설 2018.11.29.>

3. 경로식당 비회원 식대비 : 4,000원/ 1인

<개정 2018.11.29.>

단,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을 위하여 만 60세 이하의 일반인에게는 판매하지
아니 한다.

② 관장은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의 감면대상자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감면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저소득자, 국가유공자

2. 단, 본 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당연
감면 대상시설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복지관 시설에 대한 분야별 사용료 징수금액 기준은 관장이 선정하여, 춘천시장 승인 후 이행한
다.

④ 관장은 사용료의 징수 . 관리 등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시설 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한다. 다만,
정상이 참작될 경우 그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회원의 사고대책)

①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회원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이용자에 대한 영업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2. 회원이 사고로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등 긴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회원 간 다툼, 폭행에 대한 부상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4조 (이용제한-회원, 강사 등 타인 포함)

① 이용제한 대상

1. 제5조 회원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위반한 자

2. 제10조 회원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위반한 자

3. 회원, 직원 등 타인에게 폭행 또는 상해 및 복지관과 회원 등 타인의 물건을 절도한
자(교사 또는 방조한 자 포함)

4. 시설물 또는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자(교사 또는 방조한 자 포함)

5. 법정 전염병(**코로나-19 바이러스 포함**), 정신질환 등이 확인된 자

<개정 2020.05.15.>

6. 기타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다툼, 폭행 등의 사유로 서로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화해 성립이 되면 이용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이용제한 범위

1. 제14조 ①항에 다른 이용제한 대상이 된 경우(제14조 ①항 1호, 2호, 5호 제외)

<개정 2020.05.15.>

- 가. 1차 : 경고
나. 2차 : 1년 복지관 이용제한
다. 3차 : 복지관 회원 제명 또는 프로그램 폐강
2. 제14조 ①항 1호, 2호, 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05.15.>

- 가. 1차 : 이용제한 1년
나. 2차 : 복지관 회원 제명
※ 제한을 받은 자가 이용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경고 이상의 제한이 발생할 경우 누적적용

③ 진상조사위원회 결정내용 공고

<신설 2018.11.29.>

1. 제14조 ①, ②항 이용제한에 해당되어 조사·심의된 진상조사위원회의 결정내용을 기관에서는 회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체 공개하여 본 기관 전 게시판에 공고 한다.
2. 공고문의 부착기한 : 공고문 부착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부착한다.
3. 공고문을 무단 탈취 및 제거할 경우 본 규정 제14조 ①항 1, 2호에 해당되어 본 규정 제14조 ②항 이용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본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진상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5조 (이용자 수칙 및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회원 운영규정과 더불어 이용자 수칙을 두어 회원 어르신들의 원만한 복지관 생활을 지원하며, 이용자 수칙 위반 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회원운영규정 준수여부를 심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위반 시 회원운영규정에 의거한 합당한 조치를 시행한다.

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관장의 승인 하에 별도 규정한다.

제16조 (운영규정 개정)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 후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승인 후 2015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승인 후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승인 후 201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승인 후 201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승인 후 201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승인 후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승인 후 2020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이용자 수칙(공고문)

목적 : 이용자 수칙은 이용제한의 목적보다는 갈등 없이 화목하고 건강한 복지관 생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운영합니다.

1. 복지관 회원은 타 이용자들을 서로 존중함으로써 모두 함께하는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회원증은 1인당 1개만 소유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3. 프로그램 이용은 1인당 3과목으로 제한합니다.
4. 복지관 내에서의 모금 활동, 음주, 정치 영리 행위, 비방, 싸움, 고성방가 등을 하지 않습니다.
5. 복지관 내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며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지정된 장소에 비치해야 합니다. 어르신 부주의로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시 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6. 프로그램 지정시간 외의 프로그램실 사용은 기관 통보 후 절차를 거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복지관의 운영방침에 협조하지 않거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회원의 자격을 제한합니다.

- 아 래 -

① 이용제한 대상

1. 제5조 회원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위반한 자
2. 제10조 회원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위반한 자
3. 회원, 직원 등 타인에게 폭행 또는 상해 및 복지관과 회원 등 타인의 물건을 절도한자(교사 또는 방조한 자 포함)
4. 시설물 또는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자(교사 또는 방조한 자 포함)
5. 법정 전염병, 정신질환 등이 확인된 자
6. 기타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다툼, 폭행 등의 사유로 서로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화해 성립이 되면 이용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이용제한 범위

1. 제14조 ①항에 다른 이용제한 대상이 된 경우(제14조 ①항 1호, 2호, 5호 제외)

가. 1차 : 경고

나. 2차 : 1년 복지관 이용제한

다. 3차 : 복지관 회원 제명 또는 프로그램 폐강

2. 제14조 ①항 1호, 2호, 5호에 해당한 경우

가. 1차 : 이용제한 1년

나. 2차 : 복지관 회원 제명

※ 제한을 받은 자가 이용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경고 이상의 제한이 발생할 경우 누적적용

운영위원회 명부

연번	직 위	성 명	서명	비고
1	위원	이건실	이건실	
2	위원	김준해	김준해	
3	위원	최승길	최승길	
4	위원	선은성	선은성	
5	위원	임미선	임미선	
6	위원	한영미	한영미	
7	위원	허운덕	허운덕	
8	위원	함몽인	함몽인	
9	위원	황보정숙	황보정숙	당연직
10	위원	이영신	이영신	당연직
11	위원	김인조	김인조	당연직